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

**제1조 (목적)** 이 협력합의서는 제2조에 명시된 현장실습기간 동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갑"이라 한다)과 OO대학교 학생(이하"을"이라 한다) 및 을의 OO대학교(이하"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_\_\_\_\_ ~ \_\_\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갑"의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갑"이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대해 "병"이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 "병"은 "을"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실습기관 "갑"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실험장비, 초자, 시약, 물품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병"이 현장실습 협력합의서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을"은 현장실습 시 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을"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6조 현장실습생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 ② 현장실습기간 중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 ③ 현장실습을 위한 실험장비, 초자, 시약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 ④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일은 정규직 공무원의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현장실습 수당, 실습용품 등)** ① "갑"은 "을"에게 별도의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현장실습기간 중 "을"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평가)** 정해진 실습기간 종료 후 "갑"은 실습생 종합평가서를 작성·보고한다. 다만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 평가를 요청할 경우 갑은 그 결과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실험장비, 초자, 시약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 (재해보상)** "병"은 합의에 앞서 "을"에 대하여 실습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3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결과 통보)** 제3조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4조(준용)** 이 협력합의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5조(위임) 갑과 병은 그 임무를 각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 석과장과 소속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 관한다.

20 . . .

(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을)	OO 대학교 실습생명	(인)
(병)	OO 대학교 OO학과장	(인)